

부산지방법원 2020. 2. 5 선고 2019나50878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부산지방법원 2020. 2. 5 선고 2019나50878 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4. 2 선고 2018가소115322 판결

전 문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경진

피고, 항소인 B

변론 종결 2020. 1. 15

판결선 고 2020. 2. 5

제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4. 2. 선고 2018가소115322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955,9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7. 7. 23. 피고를 대리한 피고의 남편 C(2018. 8. 18. 사망, 이하 '망 인'이라 한다)와 사이에, 경북 영덕군 D 및 E(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원고 소유 지분을 피고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 여야 하므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9,955,95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를 전혀 알지 못하고, 망인에게 위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 성한 사실도 없다. 또한 피고는 2018. 10. 16. 망인의 재산에 관하여 상속포기 심판결 정을 받았다.

2. 판단

이 사건 매매계약서(갑 1호증)의 진정 성립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갑 1, 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원고 지분에 관하여 2017.7. 23.자로 원고 매도인, 피고 매수인, 매매대금 78,560,000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는 사실, 매수인란에 피고 이름이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고, 그 옆에 피고 명의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 특약으로 '양도세 부담은 매수인 측이 부담하기로 확인함끼리'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 명의로 원고 계좌에 2017. 7. 24. 7,560,000원, 2017. 9. 28. 7,800,000원이 각 입금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각 증거 및 갑 4호증의 1, 2,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소지한 망인과 부동산 중개인이 동석하였다고 하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피고의 인감증명서는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② 망인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갑 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날인된 피고의 인영이 피고의 의사에 따라 날인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인영의 진정 성립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전체의 진정 성립을 추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그 진정 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설령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유효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원고 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 전등기가 현재까지도 마쳐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1) 갑 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9,955,950원을 납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한다.

재판장 판사 성금석 판사 강윤진 판사 김유성

1) 갑 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 중 D의 원고 지분은 F에게 2017. 8.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 권이전등기가마쳐졌고(갑 4호증의 1순번 26),크의 원고 지분은 2017. 11.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G에게 이전되었다[갑 4호 증의 2순번 30).
반면,H의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피고 명의로 2017. 7. 25. 마쳐진 바는 있다(갑 4호증의 1순번24, 갑 4호증의 2순번 28).